#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14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김문수・고민정・이수진

김우영 · 허성무 · 김준혁

김동아 · 강경숙 · 이광희

조계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노동시장 내 직무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나아가 노인 인구가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 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군·구평생학습관, 유치원 및 학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lt;신 설&gt;</u>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도형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군·구평생학습관, 유치원 및 학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등에 종사하는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u>수 있다.</u>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대상・기간・방법 및 내용과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